

한동대학교 제7대 대학평의위원회

2018학년도 2학기 제1차 정기회의

(제2회 회의록)

구 분	평의원
의원정수	11명
재적인원	11명
참석인원	9명

회의 일시 : 2018. 10. 01(월) 13:00 ~ 14:10

회의 장소 : 현동홀 비전회의실

성원

1. 참석자 (9명)
이건 의장, 윤상헌 부의장, 강성준 의원, 신성만 의원, 나원상 의원, 주병창 의원, 김명호 의원, 최임성 의원, 김광수 의원
2. 불참자 (2명)
권상석 의원, 최유강 의원
3. 안건 관련 참석자 : 이종식 교무지원팀장, 박정욱 대학원교학팀장, 노안나 대학원 교학팀 계장
4. 회의록 작성 : 차효성 과장(전략기획팀)

회의 안건

- 한동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 내용

- 한동대학교 학칙 개정(안)
 - ▷ 한동대학교 학칙 개정(안) 중 제72조 (회의)의 제2항과 제3항은 다음의 수정(안)에 대하여 ‘학부장회의→기획위원회→7일간 공고→교무회의→대학평의위원회’ 절차를 다시 거쳐 재심의하기로 함. 교수회 관련 조항인 제72조 제1항과 제4항도 규정개정 진행을 보류함
 - ▷ 수정 요청 사유 : ①참석인원이 극단적으로 저조한 경우에 회의가 성립되어 의결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 반영이 필요하고(상정안은 “실제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이고, 평의위원회 의견은 “실제 출석인원에 위임한 인원을 포함한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임) ②교수회 재적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원도 파견인원도 반영이 필요하며 ③위임자의 경우, 현장 발의 혹은 수정 안건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위임의 경우 출석은 인정되나 의결권이 없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한동대학교 학칙 제24조(수강신청), 제30조(학점), 제36조의 2(학점인정), 제36조의 3(군입대 휴학자의 학점 인정), 제36조의 4(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의 학점 인정), 제69조(구성), 제70조(소집),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개정(안)으로 의결됨

상정(안) 제72조(회의)	심의 후 수정요청 방향 제72조(회의)
①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연구년 및 휴직 인원은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면 회의 참석 인원으로 간주되며, 위임한 교원의 의결권은 실제로 출석한 인원 중 과반수 표결 결과에 위임된다.	① 교수회 성립을 위한 최소한의 실제 참석인원 기준 반영 및 의결기준 반영 필요(검토하여 진행) ②연구년, 휴직 및 파견 인원은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③위임 인원의 출석인정과 의결권이 없음에 대한 내용 명확히(검토하여 진행)

○ 대학원 학칙 개정(안)은 상정 내용으로 의결됨

○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상정 내용으로 의결됨

※회의록 작성시 간결하게 의결 내용만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최대한 간결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함.

의장	이건	부의장	윤상헌	평의원	강성준	평의원	신성만	평의원	나원상	평의원	주병창
평의원	김명호	평의원	최임성	평의원	최유강 <불참>	평의원	권상석 <불참>	평의원	김광수		